도서관발전위원회의 위상

I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나라의 안팎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긴 했으나 나라가 반동강난 채, 그것도 미증유의 처참한 6·25전쟁을 겪은 폐허 위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역경속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런대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군부의 독재체제와 비민주적 요소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차차 민주체제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여러나라와 더불어 생존하는데 있어서 이 민족과 국가의 진로는 실로 예측하기 어려운 허다한 어려움과 극복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다가오는 도전의 세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치열한 국가간 경제와 과학기술 전쟁의 와중에서 이 겨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두뇌를 바탕으로 한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대명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과학기술정보를 포함한 모든 학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며 원활한 정보유통과 정보조사제공 채널의 필수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나라의 백년대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면밀하게 기획하고 검토하여야 함은 마땅하고 그 입안과 실천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 또한 당연하다. 우리는 민족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정부의 모든 기본정책방향에 대하여 여기에서 모두 논의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보와 그 이용을 극대화할 사회적 장치인 도서관발전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견해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정부는 지난해 도서관계의 오랜 여망과 선진국의 도서관 정책과 행정의 선례를 참고하여 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동법시행령도 공포한 바 있다. 동법 제9조에는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도서관발전기본정책,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도서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타 도서관진흥정책 등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조에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정보이용의 극대화, 국민의 평생교육의 진작, 문화향수 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국민의 건전한 오락과 정서함양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능동적으로 수행되는 도서관의 기능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정책이 도서관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정부에 자문한다면 국가발전 전략상 이 위원회가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위원회가 수동적이며 정부의 들러리로서가 아니고 창의적이며 주체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의 경우에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III

도서관전문직 단체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게 기대되었던 도서관발전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유감스럽게도 그 출발부터 몇가지 면에서 우리를 실망시켰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지난해 4월 8일 대통령령 제13,342호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을 1년 반 이상이나 미루어 문화부가 진정 도서관발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둘째, 도서관발전위원회 위원구성 과정과 결과를 볼 때, 도서관 전문직 단체나 문헌정보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과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인색하였고, 또한 현실적 여건을 도외시한 점이다. 물론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0명 내외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도서관 및 출판업무 관계인사 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의 위촉에 관한 권한은 정부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발전정책을 다룰 전문적인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가 집단인 한국도서관협회나 한국문헌정보학회와 사전협의하고 신중히 위촉하였더라면 위원회 구성이 발표된 직후 학계와 전문직 단체가 즉각 강력히 반발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셋째, 1년반이나 끌어 온 도서관발전위원회가 7월 24일에 열리긴 하였으나, 회의 결과는 우리를 또다시 실망시켰다는 것이다. 도서관발전위원회에서 이 나라의 도서관발전기본정책을 자문하게 되어 있다면 왜 문화부당국은 회의자료에서 도서관발전기본 방향을 이미 제시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나열하여 이미 모든 도서관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인상을 짙게 풍기는 전시 혹은 나열행정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도서관 발전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본정책이 담당공무원들의 탁상에서 입안되어 위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발상과 행정형태는, 문화부로 도서관행정이 이관되고 건국후 처음으로 담당과를 신설하여 도서관행정의 체계를 잡고 이 나라 도서관 발전을 기하려는 정부로서의 정도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첫번째 모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처음의 회의에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심의하였어야 마땅한데 운영규정이 없었으며, 정기회의를 연2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린다고 하였지만, 수시로 개최할 때의 소집에 관한 명문사항이 없으므로 회의의 공식소집권이 결국 위원장에게만 있고, 만약 위원장의 회의소집 의사가 없다면 실제로는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넷째, 도서관 진흥기금 조성액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에서 도서관행정을 이관하여 문화부로서는 일천한 상황에서 미처 진흥기금 확보에 나설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는 한다. 그러나 주무당국이 도서관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가 없으며, 향후의 방안도 매우 막연한 상태임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IV

그러하다면 결국 도서관발전위원회라는 정부의 자문회의는 형식적 요건 이상의 무엇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이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될 중요한 기관인 도서관과 정보유통을 효율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도서관 발전의 비젼을 제시함은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생동화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제의한다. 이 운영규정에는 정기회의를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 연4회는 열어야 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게 하되 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서관발전기본정책분과위원회, 도서관협력망분과위원회 및 도서관재정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열되 역시 소속분과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정부당국에 제시, 심의,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 자체내의 연구는 물론이려니와 필요한 주제와 사안들에 대하여 전문 학·협회의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촉하여 대안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첫번째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정부 주무과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대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인하는 관료적 방식의 위원회 운영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도서관정보학위원회(NCLIS)처럼,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정보공급과 도서관발전을 가져와 미국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좋은 선례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참신하고도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슬기를 지니므로써, 국제적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아 민족번영의 지름길이 될 도서관발전으로 인한 학문 및 과학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정책을 유감없이 실천하여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상완/연세대 교수)